



배포 일시	2023. 3. 26.(일)		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성훈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 나귀용 (044-201-3550)
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임희엽 (044-201-354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안전 확보 목적이 아닌 고의적인 작업 지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3.24) >

◆ “타워크레인 조종사, 강풍 불 때 임의로 조종석 벗어나면 위법?”

- 법조계 “면허정지 등 고강도 제재는 법적 근거 명확해야... 근로자 작업중지권 제약 소지”

□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법률 자문 등을 거친 이후 지난 2일에 발표하였습니다.

-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상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‘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’ 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동 기준은 타워크레인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과거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,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

□ 기사내용과 관련하여,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,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가 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’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은 처분권자(지방국토청)가 처분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(15개)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,
 - 특정 사례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며, 관련 전문가들이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상황,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에의 해당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.
- 평소 속도대로 작업을 안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,
-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(유형 3번)에서는 평소 속도에 못 미치는 모든 작업이 아닌, “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”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,
 - 이는 조종사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됩니다.
- 면허정지는 고강도 제재로, 비례의 원칙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이 올스톱 되는 정도로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,
-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근거로 이미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차등화*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.
- * 1차 위반시 3개월 / 2차 위반시 6개월 / 3차 위반시 12개월
(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)
- 성실의무 범주에 대해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고,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,
-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

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*.

*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5다65500 판결

- 그런데,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.

-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지휘·감독에 따라야 하는 건 사적계약 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시키는 건 위법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,
 - 국토교통부는 사적계약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,
 - 원도급사-임대사 간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원도급사가 작업계획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작업을 조종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, 성실업무 위반으로 간주하고,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려는 것입니다.

- 작업자의 행위가 안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관련하여,
 -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종사의 작업중지 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,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가 일방적 판단 하에 조종석을 이탈하는 등 의도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를 불성실 업무 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.
 - 한편, 건설현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·조치 등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, 작업 도중 신호수 배치, 작업계획서 공지 등을 위반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.

- 참고로, 기사와 관련하여 위에 설명된 내용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